

극지관련 국제조약·선언 핸드북
북극편 제1권

스발바르 조약

Svalbard Treaty



극지연구소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극지관련 국제조약 · 선언 핸드북
북극편 제1권

스발바르 조약

Svalbard Treaty





이 핸드북은 극지연구소 신진연구자 지원과제인 “북극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법의 제(諸) 문제” 수행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목 차

제1부 스발바르 조약의 이해	1
I. 조약의 개요	3
1. 조약 명칭	3
2. 조약 정보	3
3. 당사국 현황	4
II. 조약의 체결 배경	5
1. 스발바르 군도의 개요	5
2. 스발바르 군도에 대한 유럽의 이권 경쟁	6
III. 조약의 내용	9
1. 노르웨이의 권리 : 스발바르 군도에 대한 주권	9
2. 체약당사국 권리 : 경제활동 등의 비차별	9
3. 기타(경과규정 등)	11
IV. 조약의 쟁점 :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 주권의 한계	12
1. 논의의 배경	12
2. 스발바르 조약 당사국의 입장	14
제2부 스발바르 조약(영·한 대역)	19
I. 스발바르 조약	21
II. 스발바르 조약 부속서	34



◆

제1부 스발바르 조약의 이해





I. 조약의 개요

1. 조약 명칭

(1) 정식명칭

- 국문: 스피츠베르겐의 지위를 규정하고 노르웨이에 주권을 부여하는 조약
- 영문: TREATY REGULATING THE STATUS OF SPITSBERGEN AND CONFERRING THE SOVEREIGNTY ON NORWAY

(2) 약칭

- 스발바르 조약 (The Svalbard Treaty)

2. 조약 정보

(1) 조약 체결 및 발효

- 채 택 일 : 1920년02월09일 (프랑스 파리)
- 발 효 일 : 1925년08월14일
- 발효요건 : 모든 서명국이 비준한 날 발효
- 기 탁 처 : 프랑스 정부에 각국 비준서 기탁

(2) 우리나라 가입 및 발효

- 국무회의 : 2012년08월14일 (국회 비준동의 불요)
- 발 효 일 : 2012년09월07일
- 발효요건 : 가입 희망국이 가입을 결정하고 국내절차 완료 후, 프랑스 정부에 가입통보서를 기탁한 날 발효



3. 당사국 현황*

(2014.6.30. 현재)

당사국	비준/수락	발효	당사국	비준/수락	발효
 Afghanistan	1923.11.23	1923.11.23	 Ireland	1976.04.15	1976.04.15
 Albania	1930.04.29	1930.04.29	 Italy	1924.03.19	1925.08.14
 Argentina	1927.06.05	1927.06.05	 Japan	1924.12.16	1925.08.14
 Austria	1930.01.13	1930.01.13	 Lithuania	2012.12.21	2012.12.21
 Belgium	1925.05.27	1925.08.14	 Monaco	1925.06.22	1925.08.14
 Bulgaria	1925.10.20	1925.10.20	 Netherlands, Kingdom of	1920.07.30	1925.08.14
 Chile	1928.12.17	1928.12.17	 Norway	1924.08.08	1925.08.14
 China	1925.07.01	1925.08.14	 Poland	1931.09.02	1931.09.02
 Czech Republic**	2006.06.20	1993.01.01	 Portugal	1927.10.24	1927.10.24
 Denmark***	1923.12.24	1925.08.14	 Republic of Korea	2012.09.07	2012.09.07
 Dominican Republic	1927.02.03	1927.02.03	 Romania	1925.07.10	1925.08.14
 Egypt	1925.09.13	1925.09.13	 Russian Federation	1935.06.07	1935.06.07
 Estonia	1930.04.07	1930.04.07	 Saudi Arabia	1925.09.02	1925.09.02
 Finland	1925.08.12	1925.08.14	 Spain	1925.11.12	1925.11.12
 France	1924.09.06	1925.08.14	 Sweden	1924.06.27	1925.08.14
 Germany	1925.11.16	1925.11.16	 Switzerland	1925.06.30	1925.08.14
 Greece	1925.10.21	1925.10.21	 United Kingdom	1923.05.31	1925.08.14
 Hungary	1927.10.29	1927.10.29	 United States of America	1924.03.04	1925.08.14
 Iceland	1994.05.06	1994.05.06	 Venezuela	1928.02.08	1928.02.08

* 원서명국(1920.02.09)은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등 9개국 Yugoslavia(1925.07.06 비준, 1925.08.14 발효)는 당사국이었으나 1991년 해체됨(1991.06.25)

** Czechoslovakia(1930.07.09.비준, 1930.07.09 발효)의 해체(1993.01.01) 후, 체코공화국이 당사국지위 승계

*** 덴마크령 Faroese(1925.08.14) 및 Greenland(1925.08.14.)에도 발효(extended)됨

II. 조약의 체결 배경

1. 스발바르 군도의 개요

이 군도는 1596년 네덜란드인 항해가 바렌츠(Willem Barents)가 처음으로 탐험하였다. 당시 네덜란드와 영국 등은 이 군도를 스피츠베르겐(Spitsbergen)이라 칭하였으나, 현재는 노르웨이의 지명인 스발바르(Svalbard)가 통용되고 있다.

스발바르 군도는 유럽 본토 북부 대서양의 노르웨이와 북극점의 중간에 해당하는 북위 74°~81°, 동경 10°~35°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이 군도는 스피츠베르겐, 비에르뇌위아(Bjørnøya), 호펜(Hopen) 등 9개 주요 섬과 기타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약 62,050km²에 달한다.

[그림1] 스발바르군도 위치¹⁾



[그림2] 스발바르군도 구성²⁾



1) 위키백과 “스발바르 제도” 참조,

at <http://ko.wikipedia.org/wiki/%EC%8A%A4%EB%B0%9C%EB%B0%94%EB%A5%B4>

2) see WIKIPEDIA “Spitsbergen”, at <http://en.wikipedia.org/wiki/Spitsbergen>

스피츠베르겐 섬에 위치한 롱이어비엔(Longyearbyen)은 스발바르 군도의 행정 중심지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그 외의 정착지로는 바렌츠부르크(Barentsburg)의 러시아인 탄광촌, 니알슨(Ny-Ålesund)의 연구 기지, 스베아그루바(Sveagruva)의 탄광촌 등이 있다.

2. 스발바르 군도에 대한 유럽의 이권 경쟁

(1) 자연자원 경쟁(~19세기)

스발바르 군도는 1610년부터는 고래잡이(捕鯨)의 근거지가 되어, 1670년대에는 고래·바다사자 등의 포획이 전성기를 이루었다.

당시 덴마크, 스웨덴-노르웨이 연합(union), 영국 등은 스발바르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은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자유해론(*Mare Liberum*)에 근거하여 수렵권을 주장하였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고래잡이 경쟁이 오히려 양국 기업의 이익 저감을 초래하자, 양국은 1623년 더 이상 고래잡이로 인하여 다투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고, 이 합의는 19세기 후반까지 유지되었다. 한편 18~19세기에는 북러시아인들이 동 해역에서 바다코끼리를 포획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19세기경의 스발바르 군도는 어느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아니하는 무주지(*terra nullius*)였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이는 유럽 국가들에게 스발바르 군도의 생물, 지리, 지질 등 과학연구 활성화의 밑바탕을 제공하였지만, 그들의 생물자원 남획으로 인하여 북극고래

(bowhead whale)와 바다코끼리의 멸종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2) 석탄개발 경쟁(19세기 후반)

스발바르 군도에 관한 국제조약의 필요성이 부각된 단초는 석탄개발이었다. 포경이 한창이던 19세기 후반, 이 군도에 양질의 석탄이 대량 매장되어 있음을 파악한 유럽국가의 석탄회사들이 스발바르 군도의 석탄개발에 착수하였다.³⁾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석탄 공급량의 증가로 석탄가격이 하락하자, 급기야 1920년대 후반에 석탄개발을 종료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은 노르웨이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다. 노르웨이는 1814년 덴마크로부터 스웨덴에 양도된 이후 지속적으로 연합 내 평등권을 주장한 끝에 1905년 칼스타드(Karlstad) 회합을 통하여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냈다.

스발바르 군도에서의 광업 발달은 토지소유자의 결정, 토지소유자와 광업자 간의 분쟁해결 등 법·제도적 쟁점을 양산하였는데, 노르웨이가 1905년 독립과 동시에 북쪽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면서 광업투자자의 국적국과 노르웨이 간의 협의가 더욱 절실했다.

1907년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가 스피츠베르겐에서 회합하여 위원회(Spitsbergen Commission)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스발바르 군도가 무주지라는 전제 하에 스발바르 군도의 새로운 법제도를 제안하였다. 우선 주권 및 관할권에 관하여, 스발바르 행정권을 3국으로 구성되는 국제위원회에 부여할 것, 6년 단위 총독(Governor)을 선임할 것, 국제경찰단체(International Police Corps)를 설치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연자

3) 스피츠베르겐섬에 약 80억t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고, 그 중에서 15억t이 양질의 석탄이라 한다.

원의 개발에 관하여, 야생동식물과 자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한 특별훈령 (special directives)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각 서명국이 동등하게 자연자원의 개발 권리를 가지며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를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하여 스피츠베르겐 회합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3) 스발바르 조약의 탄생(20세기 초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최된 파리평화회의와 연계하여 1919년 스피츠베르겐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 참가국들은 스발바르 군도에 대한 노르웨이 주권, 타 회원국의 스발바르 군도의 경제적 이용 권한 및 4해리 영해 접근권, 비군사적·평화적 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르웨이, 미합중국,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대영제국과 아일랜드 및 해외영국령, 스웨덴의 1920년 2월 9일 합의된 스피츠베르겐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당사국에는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8개 회원국은 물론, 우리나라,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등 옵서버(Observer)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III. 조약의 내용

1. 노르웨이의 권리 : 스발바르 군도에 대한 주권

조약 전문은 스발바르 군도에 대한 노르웨이 주권을 인정하고, 이 지역의 개발 및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정한 제도가 수립되기를 희망함을 밝히고 있다.

제1조는 이 조약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subject to the stipulations of the present Treaty), 스발바르 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the full and absolute sovereignty)을 인정하고 있다.

조약은 노르웨이에게 스발바르 군도에 관한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노르웨이의 주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제9조는 노르웨이가 스발바르 군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가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새를 구축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스발바르 군도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체약당사국의 권리 : 경제활동 등의 비차별

제2조는 어업 및 사냥의 비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체약당사국의 선박과 국민에게 스발바르 군도 및 영해 내에서의 어업 및 사냥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equally) 향유함을 선언하였다.

제3조는 경제활동의 비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스발바르 군도의 해수, 협만 및 항구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자유를 부여하고, 지역법령의 준수를 조건으로 절대적 평등에 입각하여(on a

footing of absolute equality) 해양, 산업, 광업 및 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독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수출, 수입 및 통과운송에 대하여 체약당사국의 국민, 선박 및 상품은 노르웨이에서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s)를⁴⁾ 향유하는 국가의 국민, 선박 또는 상품이 부담하지 않는 어떠한 과징금 또는 제한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동시에 그 어떠한 유리한 대우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⁵⁾ 채택하였다.

제4조는 무선통신의 자유 및 비차별이다. 노르웨이 정부가 설립하였거나 승인한 모든 무선기지는 절대적 평등에 기초하여 모든 국적 선박 및 체약당사 국민의 통신활동에 항상 개방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전쟁 중 국제의무 준수를 조건으로 자유롭게 무선기지를 설치하여 선박, 항공기 등과 교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조는 노르웨이에게 체약당사국의 모든 국민이 사유재산의 취득, 향유, 행사에 관하여 완전히 평등한 대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면서, 외국인 재산의 수용(expropriation)은 오로지 공공이익(public utility)과 적절한 보상(proper compensation)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하였다.

제8조는 모든 종류의 세금(관세, 조세, 과징금 등) 부과에 있어 어느 한

-
- 4)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란 국가가 자국영역 내에 있는 외국, 외국인, 외국상품을 제3의 국가, 국민, 제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국영역 내에 있는 외국, 외국인, 외국제품에 대하여 다른 외국 중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국가, 국민, 제품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외국인, 외국상품 간의 비차별을 의미한다.
- 5)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란 조약당사국이 자국영역 내에서 다른 당사국의 국민 및 제품에 대하여 자국민 및 자국제품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내국민 간의 비차별, 수입제품과 국내제품 간의 비차별을 의미한다.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유리한 특권, 독점 및 특혜가 부여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다. 특히 광업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유급근로자에게 신체적·도덕적·지적 복지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속조치로 1925년 8월 7일 「스발바르 광업규칙」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스발바르 군도에서의 세금 부과는 그 목적에 필요한 수준만큼만 부과하고, 그 재원의 사용은 오직 스발바르 군도를 위해서만 그리고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액수만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타(경과규정 등)

제5조는 스발바르 군도 내에서 국제기상관측기지 설치의 가능성을 인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협약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제6조는 스발바르 조약 서명 이전에 체약당사국 국민이 취득·보유한 권리를 인정하며, 서명 이전의 토지 소유 또는 점유로부터 발생하는 청구에 관해서는 부속서에서 다룰 것을 규정하였다.

제10조는 러시아 정부가 이 조약의 당사국이 될 때까지 러시아 국민과 기업에게 조약당사국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이다. 러시아는 1935년에 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IV. 조약의 쟁점 : 스발바르 군도에 대한 노르웨이 주권의 한계⁶⁾

1. 논의의 배경

스발바르 조약이 체결된 것은 1920년의 일이었는데, 당시 국제해양질서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었다. 1930년대부터 국제해양법의 성문화 노력이 시작된 이래로, 1958년 제1차 해양법회의를 통해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주도하에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어업과 공해의 생물자원보전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등 4개 협약이 성안되었다.

1958년의 4개 협약 역시 영해의 폭 등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1960년 제2차 해양법회의와 9년간에 걸친 제3차 해양법회의를 통하여 1982년에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을 탄생시켰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영해⁷⁾ 및 접속수역⁸⁾의 폭의 범위를 설정하였고, 배타적 경제수역,⁹⁾ 군도수

6) “IV. 조약의 쟁점”은 극지연구소 정책과제 “극지연구 국제협력 역량강화 연구”의 지원으로 작성된 이용희 교수의 논문을 재구성·보완하여 작성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희, “북극스발바르조약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2013 참조.

7) 영해(territorial sea)란 연안국의 기선 외곽에 설정된 일정 폭의 바다로서, 그 폭은 12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 영해에 대하여 연안국은 주권(sovereignty)을 행사하며,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하층토에도 미친다. 여기서 기선(baseline)이라 함은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접속수역, 경제수역 등의 측정 기준선을 말하며, 기선의 내측(육지측) 수역은 내수(internal waters)가 되어 원칙적으로 연안국의 국내법이 적용되며, 기선의 외측은 UN해양법이 우선 적용된다.

8) 접속수역(contiguous zone)이란 연안국이 영토나 영해에서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을 방지하거나, 영토나 영해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로 영해 외곽에 설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9)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영해 외곽지역을 의미한다. 수역과 더불어 해저와 하층토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나, 상공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¹⁰⁾ 국제해협,¹¹⁾ 심해저¹²⁾ 등 1958년 4개 협약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해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특히 영해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군도수역 등은 연안국 관할해역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르웨이는 새로운 UN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스발바르 군도 해역에 관한 자국의 관할권 확대를 도모하였다. 노르웨이는 1977년 7월 「어업보호수역칙령」을 선포하여 스발바르 군도 주변에 200해리의 어업보호수역(fishery protection zone)을 설정하였고,¹³⁾ 2003년 7월 「노르웨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제정하여 스발바르 군도의 영해를 기존 4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하였다.¹⁴⁾ 다만, 스발바르 군도의 대륙붕을 주장하지는 아니하였다.¹⁵⁾

그러나 어업보호수역에 관하여 러시아 등 동구권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노르웨이는 어업보호수역에 몇몇 국가들에게 조업을 개방하였다.¹⁶⁾

10) 전체적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군도로 구성된 국가를 군도국가(archipelagic State)라 하며, 군도국가는 군도기선(archipelagic baselines)을 설정하여 그 내측을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으로 선포할 수 있다. 군도국가의 영해는 군도기선의 외곽에 설정된다.

11) 국제해협(international strait)이란 영해, 내수 또는 군도수역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분과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과의 사이에 있는 국제항행에 사용되고 있는 해협을 말한다.

12) 심해저(Area)라 함은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를 말한다. 즉 대륙붕 한계의 외측을 심해저라 할 수 있다.

13) 노르웨이는 1976년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제정하여 본토를 기점으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였다.

14) 접속수역은 본토의 연안에만 설정하고, 스발바르군도에 접속수역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15) 노르웨이는 1963년 「노르웨이 연안 외측 해저 및 하층토에 대한 노르웨이 주권에 관한 칙령」을 선포하였으나 스발바르 군도의 대륙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1974년 정부백서를 통하여 노르웨이는 본토로부터 대륙붕이 북극해까지 연장되며 이에 스발바르 군도가 포함되며, 스발바르 군도 자체는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밝힌 바 있다.

16) 어업보존구역 선포 초반(1977~1986)에는 이전 10년 동안 조업실적이 있는 국가에 대하여 비차별적으로 입어를 허용하였으나, 1986년부터는 전통적 어업실적에 기초하

이들 해역이 본격적으로 쟁점화 된 것은 노르웨이가 동 해역에서 주권의 일환으로 실력을 행사하면서 부터이다. 1993년부터 노르웨이는 어업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어업 선박에 대한 경고사격, 어구절단 등의 조치를 예고하였는바 1994년 아이슬란드 어선이 첫 대상이 되었고, 2004년의 스페인 어선 나포, 2005년 러시아 어선 추격 등의 강제조치가 이어졌다.

노르웨이는 스발바르 조약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어업보호수역을 선포하였으나, 다수의 스발바르 조약 당사국들은 노르웨이 정부의 일방적인 어업보호수역 선포, 관할권 주장, 그리고 실력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스발바르 조약 당사국의 입장

(1) 노르웨이의 주장

노르웨이의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노르웨이가 스발바르 군도에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UN해양법협약에 따라¹⁷⁾ 스발바르 군도의 영해 외측에 배타적 경제수역¹⁸⁾ 및 대륙붕¹⁹⁾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또한 행사할

여 쿼타제를 도입하였고, 1994년부터는 국가별 쿼타제를 시행하고 있다.

17) 노르웨이는 UN해양법협약을 1982년 12월 10일에 서명하고, 1996년 6월 24일에 비준하였다.

18) 연안국은 EEZ에서 ① 생물 및 무생물 등의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sov^{er}ign right)를 가지며,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②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반면에 ③ 타국의 항해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관설부설 등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19)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천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르웨이는 스발바르 군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스발바르 조약에는 조약체결 후에 발전된 국제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정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스발바르 조약이 상기 수역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노르웨이는 스발바르 조약이 노르웨이의 UN해양법상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2) 여타 스발바르 조약 당사국의 입장

i) 노르웨이의 어업보호수역 설정을 지지하는 입장

캐나다는 1995년에 캐나다와 노르웨이 간 「어업보전 및 집행에 관한 협정」의 교섭 단계에서 “노르웨이는 스발바르 군도 주변의 어업보호수역과 대륙붕에서 UN해양법협약이 연안국에게 부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스발바르 조약은 동 수역에 적용되는 않는다.”는 문구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동 협정은 끝내 발효되지 못하였고, 그 후 캐나다의 공식적인 입장은 알 수 없다.

핀란드 역시 1976년 당시에 노르웨이의 어업보호수역 설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2005년 철회한 바 있다.

ii) 노르웨이의 어업보호수역 및 대륙붕 설정을 반대하는 입장

러시아는 노르웨이에게 어업보호수역 설정에 관한 법적 권한이 없다

연자원이란 광물, 무생물자원은 물론 정착성 생물도 포함한다. 다만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해저와 하층토에만 미치며, 상부수역이나 상공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타국도 해저전선과 관선을 부설할 수 있다.

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스발바르 군도에 대한 주권은 국제 관습법이 아니라 스발바르 조약에 근거하는 것이며, 동 조약에 따라서만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군도에 관한 주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노르웨이는 스발바르 조약으로부터 군도의 영해를 설정할 권리만을 부여받았으므로, 체약 당사국의 동의 없이 여타 수역이나 대륙붕을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영국은 1970년대에는 노르웨이의 어업보호수역 설정에 대한 지지 및 대륙붕 설정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스발바르 군도가 독자적인 대륙붕을 가지고 있으며, 스발바르 조약이 동 대륙붕에 적용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노르웨이의 대륙붕 설정을 반대하였고, 2006년에는 스발바르에 관한 건을 국제재판에 회부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iii) 어업보호수역 설정은 가능하나, 스발바르 조약이 적용된다는 입장

아이슬란드는 어업보호수역의 쿼타(quota) 배정에서 제외되자 수역선 포 자체를 반대하였으나, 2006년에는 “스발바르 군도를 기점으로 노르웨이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으나, 동 관할해역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적 권리는 오직 스발바르 조약에 기초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덴마크는 2006년 체결한 「노르웨이와 덴마크 간 그린란드와 스발바르의 대륙붕 및 어업보호수역의 경계획정 협정」을 통하여 노르웨이의 독자적인 대륙붕 및 어업보호수역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는 동 수역에 스발바르 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덜란드 역시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군도 주변의 200해리 어업보호수역 설정을 승인하지만, 이 수역에 스발바르 조약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v) 노르웨이의 어업보호수역은 존중하나, 선박단속 권한은 없다는 입장

스페인인 어업보호수역 설정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어업보호수역 내에서의 불법어업 등의 선박 단속은 노르웨이가 아닌 기국(旗國)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스발바르 군도의 어업보호수역 설정에 관한 국가별 입장

구분	국가별 주장	비고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웨이는 스발바르 군도에 EEZ와 대륙붕을 설정하여,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행사 가능(법적 근거: UN해양법협약) • 스발바르 조약은 상기 해역에 적용되지 아니함 	스발바르군도에 '어업보호수역' 설정(1977)	
반 대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발바르 군도에 대한 노르웨이 주권은 오로지 스발바르 조약에 근거하며, • 조약은 노르웨이에 영해에 관한 권리만을 인정하였음 	스발바르조약에 따라 노르웨이의 주권적 권리 제한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발바르 군도는 독자적인 대륙붕을 가질 수 있음 • 스발바르 조약이 그 대륙붕에 적용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웨이의 EEZ 또는 대륙붕 설정 권한 인정함 • 그 주권적 권리는 (UN해양법협약에 앞서) 스발바르 조약에 기초하여 함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웨이의 EEZ 또는 대륙붕 설정 권한 인정함 • 동 해역에 스발바르 조약이 적용됨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웨이의 어업보호수역 인정함 • 동 해역에 스발바르 조약이 적용 	
기 타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웨이의 어업보호수역 설정에 침묵함(묵인) • 동 해역에서 노르웨이의 선박단속 권한 부인 	제한적 찬성
	캐나다	• 노르웨이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1995), 최근 입장 불투명	찬성→불투명
	핀란드	• 노르웨이의 어업보호수역 설정을 한때 지지(1976)하였으나, 철회(2005)	찬성→철회

[참고문헌]

- 김기순, “북극해의 분쟁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09.
-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13.
- 김현수, 「해양법총론」, 청목출판사, 2010.
- _____, 「해양법각론」, 청목출판사, 2011.
- 리우 후이룡, “북극지역의 법률 현황과 문제점”, 「해양한국」, 2009.
- 성재호,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
- 이영준·정갑용, “북극의 법체제 현황 및 그 전망”, 「사회과학논총」, 2004.
- 이용희, “북극 스발바르조약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013.
- 정인섭, 「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14.
- Anderson, D.H., “The Statu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Maritime Areas around Svalbard”, *Ocean Developed & International Law*, vol.40, (2009).
- Nordquist, Heidar and Moore, Norton (eds.), *Change in the Arctic Environment and the Law of the Sea*, (Martinus Nijhoff Publication, 2010).
- Pedersen, Torbjørn and Henriksen, Tore, “Svalbard’s Maritime Zone: The End of Legal Uncertain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24, (2009).
- Stewart Anold (ed.), *The Spitsbergen Treaty: Multilateral Governance in the Arctic*, (Spitsbergen Publication, 2012).



제2부 스발바르 조약 Svalbard Treaty





I . 스발바르 조약

Svalbard Treaty	스발바르 조약
<p>Treaty between Norwa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nmark, France, Italy, Japan, the Netherlands, Great Britain and Ireland and the British overseas Dominions and Sweden concerning Spitsbergen signed in Paris 9th February 1920</p>	<p>노르웨이, 미합중국,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대영제국과 아일랜드 및 해외영국령, 스웨덴의 1920 2월 9일 합의된 스피츠베르겐에 관한 조약</p>
<p>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is Majesty the King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and of the British Dominions beyond the Seas, Emperor of India; His Majesty the King of Denmark; the President of the French Republic; His Majesty the King of Italy; His Majesty the Emperor of Japan; His Majesty the King of Norway; Her Majesty the Queen of the Netherlands; His Majesty the King of Sweden,</p> <p>DESIROUS, while recognising the sovereignty of Norway over the Archipelago of Spitsbergen, including Bear Island, of seeing these territories provided with an equitable regime, in order to assure their development and peaceful utilisation,</p>	<p>미합중국 대통령, 대영·아일랜드 및 해외 영국령의 국왕이자 인도 국왕, 덴마크 국왕, 프랑스공화국 대통령, 이탈리아 국왕, 일본 국왕, 노르웨이 국왕, 네덜란드 여왕, 스웨덴 국왕은,</p> <p>베어 섬을 포함한 스피츠베르겐 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지역의 개발 및 평화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 영역에 공정한 제도가 수립되기를 희망하여,</p>

<p>HAVE APPOINTED as their respective Plenipotentiaries with a view to concluding a Treaty to this effect:</p> <p>[Names of plenipotentiaries not reproduced here.]</p> <p>Who, having communicated their full powers, found in good and due form, have agreed as follows:</p>	<p>이러한 취지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각 전권대표를 임명하였다.</p> <p>[전권대표 성명 생략]</p> <p>적합하고 타당한 형식의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이들 전권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p>Article 1</p> <p>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recognise, subject to the stipulations of the present Treaty, the full and absolute sovereignty of Norway over the Archipelago of Spitsbergen, comprising, with Bear Island or Beeren-Eiland, all the islands situated between 10deg. and 35deg. longitude East of Greenwich and between 74deg. and 81deg. latitude North, especially West Spitsbergen, North-East Land, Barents Island, Edge Island, Wiche Islands, Hope Island or Hopen-Eiland, and Prince Charles Foreland, together with all islands great or small and rocks appertaining thereto. (See annexed map.)</p>	<p>제1조</p> <p>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어 섬과 그리니치 동경 10도와 35도 사이와 북위 74도와 81도 사이에 위치한 모든 섬, 특히 서 스피츠베르겐, 노스이스트랜드, 바렌츠 섬, 옛지 섬, 위체 섬, 호프 섬 및 프린스 찰스 포어랜드 및 크고 작은 모든 섬과 그에 부속된 암석을 포함하여 스피츠베르겐 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로 약속한다. (부속서 지도 참조)</p>

<p>Article 2</p> <p>Ships and nationals of all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enjoy equally the rights of fishing and hunting in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and in their territorial waters.</p> <p>Norway shall be free to maintain, take or decree suitable measures to ensure the preservation and, if necessary, the re-constitution of the fauna and flora of the said regions, and their territorial waters; it being clearly understood that these measures shall always be applicable equally to the nationals of all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ithout any exemption, privilege or favour whatsoever, direct or indirect to the advantage of any one of them.</p> <p>Occupiers of land whose rights have been recognis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rticles 6 and 7 wi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hunting on their own land:</p> <p>(1) in the neighbourhood of their habitations, houses, stores,</p>	<p>제2조</p> <p>모든 체약당사국의 선박과 국민은 제1조에 명시된 영역 및 그 영해 내에서 어업 및 사냥에 관한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한다.</p> <p>노르웨이는 앞서 언급한 영역 및 그 영해 내에서 동식물군의 보존과 필요한 경우 이의 복원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자유롭게 유지·채택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이 조치는 특정한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면제, 특권 또는 특혜 없이 항상 평등하게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분명히 양해된다.</p> <p>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인정받은 토지 점유자는,</p> <p>(1) 지역경찰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재산 개발의 목적으로 건설된</p>
--	---

<p>factories and installations, construct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ir property, under conditions laid down by the local police regulations:</p> <p>(2) within a radius of 10 kilometres round the headquarters of their place of business or works; and in both cases, subject always to the observance of regulations made by the Norweg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present Article.</p>	<p>그들의 거주지, 주택, 상점, 공장 및 시설물 부근에서,</p> <p>(2) 그들의 사업 또는 근무 지역의 본부 반경 10km 이내에서, 그리고 두 경우 모두에서,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가 제정한 규정을 항상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그들의 토지에서 사냥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p>
<p>Article 3</p> <p>The nationals of all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have equal liberty of access and entry for any reason or object whatever to the waters, fjords and ports of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subject to the observance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they may carry on there without impediment all maritime, industrial, mining and commercial operations on a footing of absolute equality.</p>	<p>제3조</p> <p>모든 계약당사국의 국민은 어떠한 이유나 목적으로도 제1조에 명시된 영역의 해수, 협만 및 항구에 접근 및 진입할 동등한 자유를 가지며, 지역 법령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절대적인 평등에 입각하여 그곳에서 장애 없이 모든 해양·산업·광업 및 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p>

They shall be admitted under the same conditions of equality to the exercise and practice of all maritime, industrial, mining or commercial enterprises both on land and in the territorial waters, and no monopoly shall be established on any account or for any enterprise whatever.

Notwithstanding any rules relating to coasting trade which may be in force in Norway, ship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going to or coming from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shall have the right to put into Norwegian ports on their outward or homeward voyage for the purpose of taking on board or disembarking passengers or cargo going to or coming from the said territories, or for any other purpose.

It is agreed that in every respect and especially with regard to exports, imports and transit traffic, the nationals of all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heir ships and good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charges or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동일한 평등의 조건 하에 육지 및 영해 상에서 모든 해양·산업·광업 또는 상업적 기업 활동이 허용되며, 어떠한 이유로도 또는 어떠한 기업을 위해서도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르웨이에서 유효한 연안 무역에 관한 모든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1조에 명시된 영역을 오가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은, 이 영역을 오가는 승객 또는 화물의 승선이나 하선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목적으로, 출입 시 노르웨이의 항구에 입항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측면에서 그리고 특히 수출, 수입 및 통과운송에 대하여, 체약당사국의 국민, 선박 및 상품은 노르웨이에서 최혜국 대우를 향유하는 국가의 국민, 선박 또는 상품이 부담하지 않는 어떠한 과징금 또는 제한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p>restrictions whatever which are not borne by the nationals, ships or goods which enjoy in Norway the treatment of the most favoured nation; Norwegian nationals, ships or goods being for this purpose assimilated to those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ies, and not treated more favourably in any respect.</p> <p>No charge or restriction shall be imposed on the exportation of any goods to the territories of any of the Contracting Powers other or more onerous than on the exportation of similar goods 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ower (including Norway) or to any other destination.</p>	<p>목적에 위해 노르웨이 국민, 선박 또는 상품은 다른 계약당사국의 국민, 선박 또는 상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어떤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p> <p>계약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상품 수출에 대하여 다른 계약당사국(노르웨이 포함)의 영역 또는 다른 목적지로의 유사 상품의 수출과 다르거나 보다 과중한 과징금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p>
<p>Article 4</p> <p>All public wireless telegraphy stations established or to be established by or with the authorisation of, the Norwegian Government within the territories referred to in Article 1 shall always be open on a footing of</p>	<p>제4조</p> <p>제1조에 언급된 영역 내에 노르웨이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노르웨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는 모든 공공 무선 전신 기지는 1912년 7월 5일의 무선 전신 협약 또는 추후 이 협약을 대체하여 체결되는 국제 협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절대적</p>

<p>absolute equality to communications from ships of all flags and from national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Wireless Telegraphy Convention of 5 July 1912, or in the subsequent International Convention which may be concluded to replace it.</p> <p>Subject to international obligations arising out of a state of war, owners of landed property shall always be at liberty to establish and use for their own purposes wireless telegraphy installations, which shall be free to communicate on private business with fixed or moving wireless stations, including those on board ships and aircraft.</p>	<p>평등에 기초하여 모든 국적 선박 및 계약당사국의 국민의 통신 활동에 항상 개방된다.</p> <p>전쟁 상태에서 발생하는 국제 의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토지 재산 소유자는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무선 전신 시설을 항시 자유롭게 설치·이용할 수 있고, 선내 또는 기내에 설치된 무선 기지를 포함하여 고정 또는 이동 무선 시설을 통해 사적(私的)으로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다.</p>
<p>Article 5</p> <p>The High Contracting Parties recognise the util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meteorological station in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the organisation of which shall form the subject of a subsequent Convention.</p>	<p>제5조</p> <p>계약당사국은 제1조에 명시된 영역 내 국제 기상 관측 기지 설치의 유용성을 인정하며, 이 기지의 조직 문제는 후속 협약에서 다룬다.</p>

<p>Conventions shall also be concluded laying down the conditions under which scientific investigations may be conducted in the said territories.</p>	<p>또한 앞서 언급한 영역에서 과학조사 시행 조건을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한다.</p>
<p>Article 6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acquired rights of national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recognised. Claims arising from taking possession or from occupation of land before the signature of the present Treaty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Annex hereto, which will have the same force and effect as the present Treaty.</p>	<p>제6조 이 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취득한 권리가 인정된다. 이 조약 서명 이전의 토지의 소유 또는 토지 점유로부터 발생하는 청구에 관해서는 부속서에서 다루며, 부속서는 이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p>
<p>Article 7 With regard to methods of acquisition, enjoyment and exercise of the right of ownership of property, including mineral rights, in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Norway undertakes to grant to all national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reatment based on complete equality and in conformity with</p>	<p>제7조 노르웨이는,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서의 광업권을 포함한 재산 소유권의 취득, 향유 및 행사 방법에 관하여, 체약당사국의 모든 국민에게 완전한 평등에 기초하고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대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p>

<p>the stipulations of the present Treaty.</p> <p>Expropriation may be resorted to only on grounds of public utility and on payment of proper compensation.</p>	<p>수용은 오로지 공공이익을 근거로 적절한 보상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다.</p>
<p>Article 8</p> <p>Norway undertakes to provide for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mining regulations which, especially from the point of view of imposts, taxes or charges of any kind, and of general or particular labour conditions, shall exclude all privileges, monopolies or favours for the benefit of the State or of the nationals of any on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including Norway, and shall guarantee to the paid staff of all categories the remuneration and protection necessary for their physical, moral and intellectual welfare.</p> <p>Taxes, dues and duties levied shall be devoted exclusively to the said territories and shall not exceed what is required for the object in view.</p>	<p>제8조</p> <p>노르웨이는 특히 모든 종류의 관세, 조세 또는 과징금 및 일반적인 또는 특정한 노동 조건의 관점에서 자국을 포함한 국가 또는 특정 계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유리한 모든 특권, 독점 또는 특혜를 배제하며, 모든 범주의 유급 직원에게 신체적·도덕적·지적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보수와 보호를 보장하는 광업 규정을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다.</p> <p>징수된 조세, 수수료 및 관세는 오직 상기 영역에 대해 쓰이며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p>

So far, particularly, as the exportation of minerals is concerned, the Norwegian Government shall have the right to levy an export duty which shall not exceed 1% of the maximum value of the minerals exported up to 100,000 tons, and beyond that quantity the duty will be proportionately diminished. The value shall be fixed at the end of the navigation season by calculating the average free on board price obtained.

Three months before the date fixed for their coming into force, the draft mining regulations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Norwegian Government to the other Contracting Powers. If during this period one or more of the said Powers propose to modify these regulations before they are applied, such proposals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Norwegian Government to the other contracting Powers in order that they may be submitted to examination and the decision of a Commission composed of one

노르웨이 정부는 특히 광물 수출과 관련하여 10만 톤까지는 수출되는 광물의 최대 가치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수출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가지며, 수출량이 10만 톤을 넘는 경우 세금은 비례하여 감소한다. 광물의 가치는 항행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평균 본선인도(FOB) 가격*을 계산하여 정한다.

* 본선인도 가격이란 무역상품을 선적항에서 구매자측에게 인도할 때의 가격을 말하며, 본선 선적가격 또는 수출항 본선 인도가격이라고도 칭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광업 규정 초안을 발효가 정해진 날부터 3개월 전에 다른 계약당사국에 전달한다. 그 기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약당사국이 규정 적용 이전에 이 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그러한 제안이 각 계약당사국의 1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검토와 결정을 위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는 그 제안을 다른 계약당사국에 전달한다. 이 위원회는 노르웨이 정부의 초청으로 개최되며 제1차 회의 개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p>representative of each of the said Powers. This Commission shall meet at the invitation of the Norwegian Government and shall come to a decision within a period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its first meeting. Its decisions shall be taken by a majority.</p>	
<p>Article 9 Subject to the rights and duties resulting from the admission of Norway to the League of Nations, Norway undertakes not to create nor to allow the establishment of any naval base in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and not to construct any fortification in the said territories, which may never be used for warlike purposes.</p>	<p>제9조 노르웨이는 국제연맹 가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 해군기지를 신설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으며, 결코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기 영역에 어떠한 요새도 구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p>
<p>Article 10 Until the recognition b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of a Russian Government shall permit Russia to adhere to the present Treaty, Russian nationals and companies shall enjoy the same rights as national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p>	<p>제10조 체약당사국이 러시아 정부를 승인하여 이 조약에 대한 러시아의 가입이 허용될 때까지, 러시아 국민과 기업은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p>

<p>Claims in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which they may have to put forward shall be presented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present Treaty (Article 6 and Annex) through the intermediary of the Danish Government, who declare their willingness to lend their good offices for this purpose.</p> <p>The present Treaty, of which the French and English texts are both authentic, shall be ratified.</p> <p>Ratifications shall be deposited at Paris as soon as possible.</p> <p>Powers of which the seat of the Government is outside Europe may confine their action to informing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through their diplomatic representative at Paris, that their ratification has been given, and in this case they shall transmit the instrument as soon as possible.</p> <p>The present Treaty will come into force, in so far as the stipulations of Article 8 are concerned, from the date of its ratifications by all the signatory Powers; and in all</p>	<p>러시아 국민과 기업이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 대하여 제출하는 청구는 이러한 목적으로 주선 제공 의사를 표명한 덴마크 정부의 중개를 통해 이 조약(제6조 및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출된다.</p> <p>이 조약은 프랑스어본과 영어본 모두 정본이며, 비준된다.</p> <p>비준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파리에 기탁된다.</p> <p>유럽 지역 밖에 정부가 위치한 계약당사국은 파리 주재 외교대표를 통하여 비준 사실을 프랑스 정부에 통보하면 되며, 이 경우 계약당사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서를 송부한다.</p> <p>제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 조약은 모든 서명국이 비준한 날부터 발효하며, 다른 모든 측면에서 제8조에 규정된 광업 규정과 동일한 날에</p>
---	--

other respects on the same date as the mining regulations provided for in that Article.[2]

Third Powers will be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to adhere to the present Treaty duly ratified. This adhesion shall be effected by a communication addressed to the French Government, which will undertake to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abovenamed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e present Treaty.

발효한다.

제3국은 정당하게 비준된 이 조약의 가입을 위해 프랑스 정부에 의해 초청된다. 프랑스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가입이 이루어지며, 프랑스 정부는 이를 다른 체약당사국에 통고한다.

이상의 증거로, 상기 전권대표들은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II. 스발바르 조약 부속서

ANNEX	부속서
<p>DONE at Paris, the ninth day of February, 1920, in duplicate, one copy to be transmitted to the Government of His Majesty the King of Norway, and on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French Republic; authenticated copies will be transmitted to the other Signatory Powers.</p> <p>[Signatures not reproduced here.]</p>	<p>1920년 2월 9일 파리에서 각 2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노르웨이 정부에 송부하고 다른 한 부는 프랑스 문서보관소에 기탁하며, 인증 사본은 조약의 여타 서명국에 송부한다.</p> <p>[서명 생략]</p>
<p>1.</p> <p>(1)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present Treaty, notification of all claims to land which had been made to any Government before the signature of the present Treaty must be sent by the Government of the claimant to a Commissioner charged to examine such claims. The Commissioner will be a judge or jurisconsult of Danish nationality possessing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for the task, and shall be nominated by the Danish Government.</p>	<p>1.</p> <p>(1) 이 조약 서명 전에 어느 정부에 제기된 토지에 대한 모든 청구의 통고는 청구국 정부에 의해 조약의 발효부터 3개월 이내 그러한 청구를 조사할 임무를 지닌 판무관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판무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덴마크 국적의 판사 또는 법률 고문으로, 덴마크 정부가 지명한다.</p>

- | | |
|---|---|
| <p>(2) The notification must include a precise delimitation of the land claimed and be accompanied by a map on a scale of not less than 1:1,000,000 on which the land claimed is clearly marked.</p> | <p>(2) 통고는 청구된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포함해야 하며, 청구된 토지가 명확히 표기된 1/1,000,000 이상 축척의 지도가 첨부되어야 한다.</p> |
| <p>(3) The notif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the deposit of a sum of one penny for each acre (40 ares) of land claimed, to defray the expenses of the examination of the claims.</p> | <p>(3) 통고 시 청구 검토 비용 부담을 위해 청구된 토지 1 에이커(40 아르)당 1페니로 계산한 총액의 기탁금을 첨부해야 한다.</p> |
| <p>(4) The Commissioner will be entitled to require from the claimants any further documents or information which he may consider necessary.</p> | <p>(4) 판무관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추가 서류 또는 정보를 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p> |
| <p>(5) The Commissioner will examine the claims so notified. For this purpose he will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such expert assistance as he may consider necessary, and in case of need to cause investigations to be carried out on the spot.</p> | <p>(5) 판무관은 이와 같이 통고된 청구를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판무관은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명할 수 있다.</p> |
| <p>(6) The remuneration of the Commissioner will be fixed by agreement between the Danish Government and the other</p> | <p>(6) 판무관의 보수는 덴마크 정부와 여타 관계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판무관은 고용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보조 인력의 보수를 정한다.</p> |

Governments concerned. The Commissioner will fix the remuneration of such assistants as he considers it necessary to employ.

(7) The Commissioner, after examining the claims, will prepare a report showing precisely the claims which he is of opinion should be recognised at once and those which, either because they are disputed or for any other reason, he is of opinion should be submitted to arbitration as hereinafter provided. Copies of this report will be forwarded by the Commissioner to the Governments concerned.

(8) If the amount of the sums deposited in accordance with clause (3) is insufficient to cover the expenses of the examination of the claims, the Commissioner will, in every case where he is of opinion that a claim should be recognised, at once state what further sum the claimant should be required to pay. This sum will be based on the amount of the land to which the claimant's title

(7) 판무관은 청구를 검토한 후 그가 즉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구 및 분쟁 중이거나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이하 언급되는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보고서를 준비한다. 판무관은 이 보고서의 사본을 관계 정부에 송부한다.

(8) (3)에 따라 기탁된 보증금의 총액이 청구 검토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하면, 판무관은 인정받아야 할 청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경우 청구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추가 금액을 즉시 공개한다. 이러한 금액은 청구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의 양에 기반한다.

is recognised.

If the sums deposited in accordance with clause (3) exceed the expenses of the examination the balance will be devoted to the cost of arbitration hereinafter provided for.

(9)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port referred to in clause (7) of this paragraph, the Norwegian Government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confer upon claimants whose claims have been recognised by the Commissioner a valid title securing to them the exclusive property in the land in ques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or to be enforced in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of the present Treaty, and subject to the mining regu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resent Treaty.

In the event, however, of a further payment being required in accordance with clause (8) of this paragraph, a provisional title only will be delivered, which title will become definitive on payment by

(3)에 따라 기탁된 보증금이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이하 제공될 중재 비용으로 사용한다.

(9) 이 조약의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인 법령에 따라 그리고 이 조약의 제8조에 규정된 광업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르웨이 정부는 이 항의 (7)에 언급된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무관이 청구를 인정한 청구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 재산을 보장하는 유효한 소유권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러나 이 항의 (8)에 따라서 추가 금액 지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인 소유권만이 부여되며, 노르웨이 정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청구자가 요구된 추가

<p>the claimant, within such reasonable period as the Norwegian Government may fix, of the further sum required of him.</p>	<p>금액을 지불하면 소유권이 확정된다.</p>
<p>2.</p> <p>Claims which for any reason the Commissioner referred to in clause (1) of the preceding paragraph has not recognised as valid will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p> <p>(1)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port referred to in clause (7) of the preceding paragraph, each of the Governments whose nationals have been found to possess claims which have not been recognised will appoint an arbitrator.</p> <p>The Commissioner will be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so constituted. In cases of equal division of opinion, he shall have the deciding vote. He will nominate a Secretary to receive the documents referred to in</p>	<p>2.</p> <p>전 항의 (1)에 언급된 판무관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청구는 다음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p> <p>(1)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청구자의 국적국 정부는 전 항의 (7)에 언급된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한다.</p> <p>판무관은 이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장(長)이 된다. 판무관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 투표권을 갖는다. 판무관은 이 항의 (2)에 언급된 문서를 접수하고 중재판정부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수행할 서기를 지명한다.</p>

clause (2) of this paragraph and to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s for the meeting of the Tribunal.

(2) Within one month from the appointment of the Secretary referred to in clause (1) the claimants concerned will send to him through the intermediary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statements indicating precisely their claims and accompanied by such documents and arguments as they may wish to submit in support thereof.

(3) Within two months from the appointment of the Secretary referred to in clause (1) the Tribunal shall meet at Copenhagen for the purpose of dealing with the claims which have been submitted to it.

(4) The language of the Tribunal shall be English. Documents or arguments may be submitted to it by the interested parties in their own language, but in that case must be accompanied by an English translation.

(5) The claimants shall be

(2) 관련 청구인은 (1)에 언급된 서기의 임명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각의 정부를 통해 자신의 청구를 정확히 적시하고 있는 진술 및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고자 하는 근거 문서 및 주장을 서기에게 송부한다.

(3) 제출된 청구를 다루기 위한 판정을 (1)에 언급된 서기의 임명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코펜하겐에서 개최한다.

(4) 중재판정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이다.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언어로 된 문서 및 주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영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은 희망할 경우 직접 또는

entitled, if they so desire, to be heard by the Tribunal either in person or by counsel, and the Tribunal shall be entitled to call upon the claimants to present such additional explanations, documents or arguments as it may think necessary.

(6) Before the hearing of any case the Tribunal shall require from the parties a deposit or security for such sum as it may think necessary to cover the share of each party in the expenses of the Tribunal. In fixing the amount of such sum the Tribunal shall base itself principally on the extent of the land claimed. The Tribunal shall also have power to demand a further deposit from the parties in cases where special expense is involved.

(7) The honorarium of the arbitrators shall be calculated per month, and fixed by the Governments concerned. The salary of the Secretary and any other persons employed by the Tribunal shall be fixed by the President.

변호인을 통해 중재판정부의 심리를 받을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설명, 서류 또는 주장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모든 사건의 심리 전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중재판정부 비용의 분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의 기탁금 또는 담보를 요구한다. 그러한 금액의 총액을 확정하는 데 있어 중재판정부는 주로 청구된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한다. 또한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추가 보증금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7) 중재인의 보수는 월별로 산정되며 관계 정부가 확정한다. 서기 및 중재판정부에 고용된 다른 직원들의 보수는 중재판정부의 장이 정한다.

(8)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nnex the Tribunal shall have full power to regulate its own procedure.

(9) In dealing with the claims the Tribunal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a) any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b) the general principles of justice and equity;

(c) the following circumstances:

(i) the date on which the land claimed was first occupied by the claimant or his predecessors in title;

(ii) the date on which the claim was notified to the Government of the claimant;

(iii) the extent to which the claimant or his predecessors in title have developed and exploited the land claimed. In this connection the Tribunal shall take into account the extent to which the claimants may have been prevented from developing their undertakings by conditions or restrictions resulting from the war of 1914-1919.

(8) 이 부속서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절차를 규정할 전권을 갖는다.

(9) 중재판정부는 청구를 처리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가) 모든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

(나) 정의와 형평의 일반원칙

(다) 다음의 사정

(i) 청구된 토지가 청구인에 의해 또는 전 소유자에 의해 최초 점유된 날짜

(ii) 청구가 청구인의 정부에 통보된 날짜

(iii) 청구인 또는 전 소유자가 청구된 토지를 개발 또는 이용하였던 (시간적) 범위.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1914~1919년 동안의 전쟁으로부터 야기된 조건 또는 제한에 의해 그들의 사업 개발이 방해받을 수 있었던 범위를 고려한다.

(10) All the expenses of the Tribunal shall be divided among the claimants in such proportion as the Tribunal shall decide. If the amount of the sums paid in accordance with clause (6) is larger than the expenses of the Tribunal, the balance shall be returned to the parties whose claims have been recognised in such proportion as the Tribunal shall think fit.

(11) The decisions of the Tribunal shall be communicated by it to the Governments concerned, including in every case the Norwegian Government.

The Norwegian Government shall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receipt of each decision take the necessary steps to confer upon the claimants whose claims have been recognised by the Tribunal a valid title to the land in ques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or to be enforced in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and subject to the mining regu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res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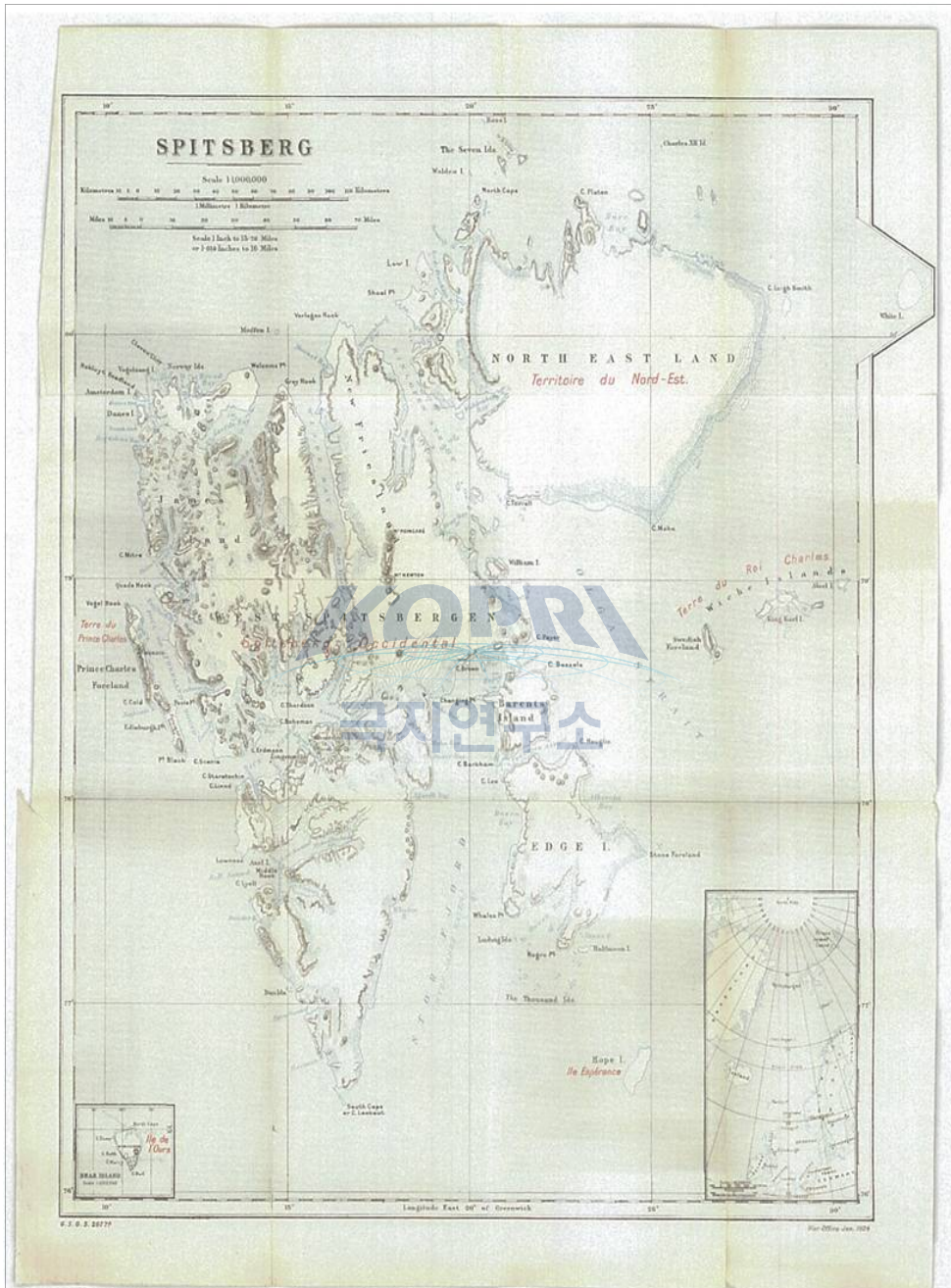
(10) 중재판정부의 모든 비용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비율에 따라 청구인 간에 분배된다. 만일 (6)에 따라 지불된 금액의 총액이 중재판정부의 비용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은 중재판정부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비율에 따라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청구 당사자에게 반환된다.

(11) 중재판정부는 항상 노르웨이 정부를 포함한 관계 정부에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전달한다.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인 법령에 따라, 이 조약의 제8조에 규정된 광업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르웨이 정부는 중재판정부 결정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쟁 중인 토지에 대해 중재판정부로부터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청구를 제기한 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여되는 소유권은 노르웨이 정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p>Treaty. Nevertheless, the titles so conferred will only become definitive on the payment by the claimant concerned, within such reasonable period as the Norwegian Government may fix, of his share of the expenses of the Tribunal.</p>	<p>청구자가 중재판정부 비용의 부담액을 지불할 때에만 확정된다.</p>
<p>3.</p> <p>Any claims which are not notified to the Commissioner in accordance with clause (1) of paragraph 1, or which not having been recognised by him are not submitted to the Tribuna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will be finally extinguished.</p> <p>MAP OF SPITSBERG [Not reproduced here - see UKTS 1924 No. 18 (Cmd. 2092).]</p>	<p>3.</p> <p>제1항의 (1)에 따라 판무관에게 통보되지 않거나 또는 판무관이 인식하지 못한 청구로서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모든 청구는 최종적으로 소멸된다.</p> <p>[그림3] 스피츠베르겐 지도 - UKTS 1924 No.18 (Cmd. 2092) 참조.</p>

[그림 3] 스피츠베르겐 지도²⁰⁾



20) UKTS 1924 No.18 (Cmd. 2092), *United Kingdom Treaty Series*,
at <http://treaties.fco.gov.uk/treaties/treatyrecord.htm?tid=3850>

<p>PROTOCOL EXTENDING THE PERIOD OF SIGNATURE OF THE TREATY RELATIVE TO SPITSBERGEN (Translation)</p> <p>The plenipotentiaries who, in consequence of their absence from Paris for the time being, have been unable to affix their signature to the Treaty concerning Spitsbergen, signed this day, will be permitted to do so until 8 April 1920.</p> <p>DONE at Paris, 9 February 1920.</p> <p>[Signatures not reproduced here.]</p> <p>[1] The Treaty and Protocol were signed for Australia 9 February 1920. Instrument of ratification deposited for the British Empire, including Australia, 29 December 1923.</p> <p>[2] The Treaty entered into force for Australia and generally 14 August 1925.</p>	<p>스피츠베르겐에 관한 조약의 서명 기간연장 협약 (번역)</p> <p>해당 기간 파리에 참여 할 수 없어, 당일 스피츠베르겐에 관한 조약 서명을 할 수 없었던 각국의 전권대표들은 1920년 4월 8일까지 서명하도록 허락한다.</p> <p>1920년 2월 9일 파리에서 작성됨.</p> <p>[서명 생략]</p> <p>[1] 본 조약과 협약은 1920년 2월 9일 호주에서 서명되었으며, 비준서는 1923년 12월 29일 호주를 포함하여 대영제국에 기탁되었다.</p> <p>[2] 본 조약은 호주에서, 1925년 8월 14일 효력이 발생했다.</p>
---	--





스발바르 조약

극지관련 국제조약·선언 핸드북, 북극편 제1권

Copyright © 2014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전 화 : (032)770-8423

E-Mail : seows@kopri.re.kr





KOPRI
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Tel. (032)770-8423
<http://www.kopri.re.kr>